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841
- 제 안 자 : 김형재 의원(찬성의원 45명)
- 제 안 일 : 2023년 5월 30일
- 회 부 일 : 2023년 6월 5일

2. 제안이유

- 최근 신설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이산가족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입법예고(2023. 6. 8. ~ 6. 12.)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이산가족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¹⁾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안 부칙 제2조)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5조</u>(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u>제1항</u>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u>제6조</u> ~ <u>제8조</u>(생략)</p>	<p><u>제5조(이산가족의 날)</u>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p> <p><u>제6조</u>(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5조 및 제6조제1항</u>----- ----- ----- ----- -----.</p> <p><u>제7조</u> ~ <u>제9조</u>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p>

- 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 ‘이산가족의 날(추석 전전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동 법률개정(’23.3.28.시행) 내용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은 ‘이산가족의 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서울시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예산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이산가족 관련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1982년부터 자체적으로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왔으며, 2011년부터 매년 추석 전전날에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음.(참고자료3 참조)

[서울시 거주 이산가족 현황]

- 서울시 거주 이산가족은 10,481명(25.5%)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 출처 : 통일부, 2023.5.31.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인원수(명)	10,481	1,769	963	3,332	393	886	337	12,442	2,501	1,382
비율(%)	25.5	4.3	2.3	8.1	1.0	2.2	0.8	30.2	6.1	3.4
구 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해외		계
인원수(명)	1,282	717	610	1,264	1,006	423	171	1,187		41,146
비율(%)	3.1	1.7	1.5	3.1	2.4	1.0	0.4	2.9		100

※ ‘이산가족’ 정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조례 제정('21.12.30.) 이후 이산가족 지원 관련 추진실적]

일시	사업 추진실적
'22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관련 자문회의 개최 - 자문기관 : KBS 다큐멘터리국, 대한적십자
'22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22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예산 편성 -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 1억 5천만원 - 남북 이산가족 인권 등 문제해결 지원 : 2억 3천 2백만원
'22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시장 표창 수여 및 축전 전달 - 행사주최: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23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축하 시장 축전 전달 - 행사주최: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이산가족 관련 기록물·사진전시회 개최(협의 중) - 주최/주관: 서울역사박물관 - 일시/장소: '23.11월 ~ '24.1월(예정)

-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제2항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음.
- 다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중요한 인도적 과제임에도 2018년 이후 2023년 5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산가족 연령은 8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의 67%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준비와 함께 중앙정부에 촉구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연령별 생존자 현황]

- 출처 : 통일부, 2023.5.31.기준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12,807	14,779	7,492	3,817	2,251	41,146
비율(%)	31.1	35.9	18.2	9.3	5.5	100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이태기
------	-----	-------	-----

[참고자료 1] 이산가족 교류 현황 (2023.5.31.기준, 출처: 통일부)



구분 연도	당국차원										민간차원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회상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	기타	상봉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건	건	건	명
1985년	65	157			30	81	35	76							
1990년											35	44		6	
1991년											127	193		11	
1992년											132	462		19	
1993년											221	948		12	
1994년											135	584		11	
1995년											104	571		17	
1996년											96	473		18	
1997년											164	772		61	
1998년											377	469		109	2
1999년											481	637		200	18
2000년	792	5,276	39	39	201	1,720	202	674			447	984		152	392
2001년	744	4,937	623	623	100	899	100	343			208	579		170	493
2002년	261	1,635	9	9			398	1,724			198	935		208	616
2003년	963	7,091	8	8			598	2,691			388	961		283	677
2004년	681	5,007					400	1,926			209	776		188	470
2005년	962	6,957					397	1,811	199	1,323	276	843		95	261
2006년	1,069	8,314					594	2,683	80	553	69	449		54	105
2007년	1,196	9,121					388	1,741	278	1,872	74	413		55	167
2008년											50	228		36	97
2009년	302	2,399					195	888			35	61		23	51
2010년	302	2,176					191	886			16	15		7	18
2011년											3	21		4	14
2012년											6	16		3	6
2013년	316	2,342									9	22		3	5
2014년							170	813			6	11		5	10
2015년	317	2,155					186	972			4	26		1	4
2016년											6	43		3	8
2017년											10	46	1	1	2
2018년	292	1,996					170	833			7	36	1	1	1
2019년											2	16		1	1
2020년												4			
2021년												3			
2022년											1	3			
2023.5월												2			
합계	8,262	59,563	679	679	331	2,700	4,024	18,061	557	3,748	3,896	11,646	2	1,757	3,418

* 기타 : 성묘방북

[참고자료 2] 이산가족 신청 현황 (2023.5.31.기준, 출처: 통일부)



◇ 개요

○ 대상 : '88 ~ '23.5.31. 신청인 등록 분 전체 133,680명

구 분	신청자	생존자	사망자
전월 대비	2 증가	277 감소	279 증가
'88~현재	133,680	41,146	92,534
'88~전월	133,678	41,423	92,255

◇ 생존자 현황

① 연령별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12,807	14,779	7,492	3,817	2,251	41,146
비율(%)	31.1	35.9	18.2	9.3	5.5	100

② 가족관계별

구 분	부부/부모/자녀	형제/자매	3촌이상	계
인원수(명)	16,383	16,976	7,787	41,146
비율(%)	39.8	41.3	18.9	100

③ 출신지역별

구 분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	경기	강원	기타	계
인원수(명)	8,522	4,392	2,527	3,802	1,223	1,317	619	18,744	41,146
비율(%)	20.7	10.7	6.1	9.2	3.0	3.2	1.5	45.6	100

④ 성별

구 분	남자	여자	계
인원수(명)	25,181	15,965	41,146
비율(%)	61.2	38.8	100

⑤ 거주지별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인원수(명)	10,481	1,769	963	3,332	393	886	337	12,442	2,501	1,382
비율(%)	25.5	4.3	2.3	8.1	1.0	2.2	0.8	30.2	6.1	3.4
구 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해외	계	
인원수(명)	1,282	717	610	1,264	1,006	423	171	1,187	41,146	
비율(%)	3.1	1.7	1.5	3.1	2.4	1.0	0.4	2.9	100	

◇ 사망자현황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26,997	40,266	19,737	4,565	969	92,534
비율(%)	29.2	43.5	21.3	4.9	1.0	100

[참고자료 3] 이산가족의 날 행사 개최연혁

- 출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22.11월)

회수	날짜	추석 공휴일 전날 여부	장 소	인 원(명)	행 사
1회	82.8.12	X	통일회관대강당	500	재회촉구
2회	83.7.17	X	장충체육관	13,000	재회촉구
3회	84.9.18	X	장충체육관	13,000	재회촉구
4회	85.8.12	X	국립중앙극장	1,200	재회촉구
5회	86.8.12	X	세종문화회관	700	재회촉구
6회	87.10.3	X	임진각	20,000	재회촉구
7회	88.10.9	X	효창운동장	25,000	체육대회
8회	89.10.2	X	장충체육관	15,000	세계대회
9회	90.9.16	X	장충체육관	10,000	재회촉구
10회	91.9.16	X	세종문화회관	4,000	세계한민족
11회	92.9.17	X	장충체육관	12,000	고향방문촉구
12회	93.9.22	X	장충체육관	12,000	화합의장
13회	94.9.14	X	장충체육관	12,000	재회촉구
14회	95.10.7	X	장충체육관	7,000	통일기원
15회	96.9.20	X	세종문화회관	800	재회촉구
16회	97.10.6	X	세종문화회관	800	재회촉구
17회	98.9.19	X	세종문화회관	800	재회촉구
18회	99.9.20	X	세종문화회관	800	재회촉구
19회	00.10.9	X	세종문화회관	800	재회촉구
20회	01.10.23	X	세종문화회관	800	재회촉구
21회	02.9.26	X	세종문화회관	800	재회촉구
22회	03.9.22	X	세종문화회관	300	재회촉구
23회	04.9.21	X	통일회관대강당	500	재회촉구
24회	05.9.27	X	통일회관대강당	500	재회촉구

회수	날짜	추석 공휴일 전날 여부	장 소	인 원(명)	행 사
25회	06.9.15	X	프레스센터회의장	400	생사확인
26회	07.10.11	X	프레스센터회의장	400	생사확인
27회	08.10.21	X	통일회관대강당	450	생사확인
28회	09.10.31	X	임진각망배단	500	통일기원
29회	10.10.29	X	임진각망배단	2,000	상봉정례화
30회	11.9.10	○	오두산전망대	600	추석망향제
31회	12.9.28	○	오두산전망대	500	생사소재확인
32회	13.9.17	○	오두산전망대	600	추석망향제
33회	14.9.6	○	이북5도청	500	재회촉구
34회	15.9.25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300	망향제
35회	16.9.13	○	오두산전망대	500	망향제
36회	17.10.2	○	이북5도청	500	추석망향제
37회	18.9.21	X	이북5도청	500	추석망향제
38회	19.9.11	○	이북5도청	500	추석망향제
39회	비대면	-	비대면	300	위로물품 발송
40회	비대면	-	비대면	350	위로물품 발송
41회	22.9.8.	○	이북5도청	300	추석망향제